■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5. 1.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15,100	21	3,478,900
2	1,973,100	22	3,607,300
3	2,031,900	23	3,734,600
4	2,090,500	24	3,862,300
5	2,149,600	25	3,989,800
6	2,208,600	26	4,117,800
7	2,267,000	27	4,251,300
8	2,325,100	28	4,384,500
9	2,365,500	29	4,523,800
10	2,387,800	30	4,663,600
11	2,408,300	31	4,803,000
12	2,455,700	32	4,942,200
13	2,567,600	33	5,083,700
14	2,679,900	34	5,224,600
15	2,792,000	35	5,365,800
16	2,904,500	36	5,506,400
17	3,015,500	37	5,628,700
18	3,131,900	38	5,751,200
19	3,247,500	39	5,873,900
20	3,363,300	40	5,995,800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